

대구광역시치매및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7. 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제안이유

서로 다른 명칭으로 위탁·운영중인 우리시의 노인치매 관련 전문병원들이 동명을 이용한 병원 명칭으로 바꾸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이들 병원들에 적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명칭을 바꾸고, 병원 운영의 공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병원 명칭을 동명을 사용하여 “대구광역시 ○○ 노인전문병원” 으로 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병원 운영의 공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나. 관계법령 : 붙임(「노인보건복지법」 제29조·제35조, 「노인보건복지 사업지침」)
-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기 타 : 입법예고(2007. 4. 20~5. 10)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치매및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치매및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대구광역시치매및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를□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대구광역시치매및노인전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와 명칭) ①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

②병원의 명칭은 동명을 사용하여□대구광역시 ○○ 노인전문병원□으로 한다.

제3조제6호 중□계몽□을□홍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의료보험법 및 의료보호법□을□「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환자의 일상활동 자립도 수준이 3군 이상이라고 판정□을□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관리규정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병원을 수탁 운영하는 자는 병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병원은 병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대구광역시치매및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p>	<p>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및노인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u>대구광역시치매및노인전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u>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u>----- ----- -----.</p>
<p>제2조(위치) 병원은 <u>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u> 관할구역안에 둔다.</p>	<p>제2조(위치와 명칭) ① <u>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u> (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관할구역 안에 둔다. ② 병원의 명칭은 동명을 사용하여□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으로 한다.</p>
<p>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5.(생략) 6. 치매에 대한 교육·계몽 및 치매관리전문요 원 양성 7.(생략)</p>	<p>제3조(업무)----- 1.~5. (현행과 같음) 6. -----<u>홍보</u>----- ----- 7. (현행과 같음)</p>
<p>제5조(의료수가) ①병원의 의료수가는 <u>의료보험법</u> <u>및 의료보호법의</u>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 다. ②(생략)</p>	<p>제5조(의료수가) ① ----- 「<u>국민</u> <u>건강보험법</u>」과 「<u>의료급여법</u>」----- ----- 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입원 및 퇴원) ①치매환자의 입원 은 병 원의 외래환자 또는 보건소 등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매환자로 진단을 받은 자로서 병원의 전문의로 부터 환자의 일상활동자립도 수준이 3군이상이라 고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②(생략)</p>	<p>제6조(입원 및 퇴원) ①----- ----- ----- -----<u>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u>----- ----- 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관리규정) 수탁기관은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8조(관리규정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병원을 수탁 운영하는 자는 병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병원은 병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p>

관 계 법 령

[노인복지법]

제29조(치매관리사업)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 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2007년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

1) 목적 :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질환의 악화방지 및 치매노인 가족의 부담경감

2) 지원 근거 : 노인복지법 제29조(치매관리사업) 및 시행규칙 제11조

3) 설치기준 : 시설의 종류 : 의료법 제33조제2항의 요양병원

4) 설치주체 및 운영자

- 병원 시설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건축공사 계약주체가 되어 설치를 완료해야 하고 치매병원의 운영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법인 등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음.

- 위탁사업자 등이 병원 건축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동 부지를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함.

5) 명칭사용

병원 개설명칭은 “시·도립(또는 군립)치매요양병원 또는 노인치매(또는 요양)병원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의 법인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6) 운영기준

시·도립노인치매병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관련규정(규칙 또는 조례)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